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용자 접속정보 공개〉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17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이용자의 계정정보 확인 조치 등(안 제44조의27 및 제76조제3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덕흠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6. 1. 21.

다. 회 부 일 : 2026. 1.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망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익명성에 기반하여 해외에 소재를 둔 계정이 마치 국내 사용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여론 조작 시도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지만,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계정의 실제 접속 국가나 생성 위치 등 출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들이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계정과 관련하여 이용 및 접속 장소 기준 국가명, 계정 생성일 등 정보를 표시·공개하도록 하여 온라인 공론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4조의27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이용자의 계정정보 확인 조치 등(안 제44조의27 및 제76조제3항)

가. 개정안 요지

- “계정”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조치의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여야 함(안 제2조제4호의2 및 안 제44조의27제1항).
 - 계정 생성일(제1호)
 - 이용 및 접속 장소의 국가명(제2호)
 - 이용자 식별부호의 변경 이력(제3호)
 - 그 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호)
- 조치의무사업자는 표시·공개 대상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안 제44조의27제2항).
- 조치의무사업자가 표시·공개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보 보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제3항 제4호의5 및 제4호의6)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①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계정”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를 식별하고 이용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한 기능적 단위로서 이용자 식별부호(이용자가 설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문자, 숫자 또는 그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에 결합된 정보의 집합을 말한다.
5. ~ 13. (생략) ② (생략)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신설></u>	5.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27(이용자 계정 정보의 표시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 업자”라 한다)는 해당 정보통 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계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여야 한다.</u> <u>1. 계정 생성일</u> <u>2. 이용 및 접속 장소의 국가명</u> <u>3. 이용자 식별부호의 변경 이 력</u> <u>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② 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 다.</u> <u>③ 제1항에 따른 표시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4. (생략) <u><신설></u> <u><신설></u> <u>4의5. · 4의6.</u> (생략) 5. ~ 24. (생략) ④ (생략)	----- -----. 1. ~ 4의4. (현행과 같음) <u>4의5. 제44조의27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표시·공개하지 아니한 자</u> <u>4의6. 제44조의27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u> <u>4의7. · 4의8.</u> (현행 제4호의5 및 제4호의6과 같음) 5. ~ 2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 정보통신망이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익명성을 무기로 해외 소재 계정이 국내 이용자를 사칭하여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가 유포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여론 조작 시도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별도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계정 정보 및 접속 정보 등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계정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접속 장소 기준 국가명, 계정 생성일 등 정보를 표시·공개하도록 하여 이용자 스스로 정보 제공자에 대해 판단할 근거를 제공하며 온라인 공론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의 필요성과 입법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계정 관련 정보를 표시·공개하는 것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¹⁾을 제한할 여지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2020헌마147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 조치의무사업자가 표시·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로 계정 생성일, 이용자 식별부호의 변경 이력 등이 있는데, 계정은 안 제2조제4호의2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용자를 식별하고 이용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한 기능적 단위로서 이용자 식별부호와 그에 결합된 정보의 집합인데, 그러한 계정 관련 정보를 표시·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제한되는 기본권과 보호 법익 간의 비례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2)에 따라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포함하는 바, 계정생성일이나 이용자 식별부호 변경 이력 등도 개인정보로 상황에 따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정보로 인정될 가능성 있음.

○ 둘째, 개정안에 따른 조치가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헌법 제15조³⁾에 따른 직업의 자유는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포함하며,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함(96헌가18).
-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자로서는 이용자의 이용 및 접속 장소 기준 국가를 파악하고 통계를 내야 하며 그러한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는 데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음.

○ 둘째,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임.

- 표시·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들 전체에게 공개되는 정보이고 그러한 정보를 표시·공개하여야 하는 조치의무 사업자에게도 큰 부담이 되며 표시·공개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어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바 의회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4조의2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구체적으로 표시·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으나, 제4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표시·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가 무한하게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바, 신

3)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넷째,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인지 검토가 필요함.
 - 개정안은 이용 및 접속 장소의 국가명을 표시·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VPN등을 활용한 우회접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인터넷 공론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우회접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속국가 정보를 표시·공개하는 경우, 실제 접속국가가 아닌 제3의 국가로 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또한, 계정 생성일 등 그밖의 정보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표시·공개·보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228